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매몰지 확보 기준

- 1)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 2)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3)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축 및 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액등처리업은 매몰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牛房)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 (2) 송아지는 젖을 떤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 (4) (1)부터 (3)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한우·육우) 등록을 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번식우에서 태어난 8개월령 이하의 소는 해당 농장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젖소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1) 홀스타인(Holstein)종

(단위: m²)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 (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 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8.3	8.3	8.3	6.4	4.3

비고

1. 경산우: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2. 착유우: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3. 건유우: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4. 미경산우: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의 암소
5. 깔짚 방식: 한우·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6. 프리스톨 방식: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2) 저지(Jersey)종

(단위: m²)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 (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1.6	9.5	7.6	4.5	4.3
계류식	5.9	5.9	5.9	4.5	4.3
프리스톨 방식	5.8	5.8	5.8	4.5	4.3

(3) 그 밖의 젖소 품종: (1)의 기준에 따른다.

나) 일관경영(번식경영과 비육경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영 형태를 말한다)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1) 홀스타인종

(단위: m²)

시설 형태	깔짚 방식	계류식	프리스틀 방식
마리당 면적	12.8	8.6	9.0

비고

1. 계류식: 착유우사·건유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프리스틀 방식: 착유우사는 프리스틀,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저지중

(단위: m²)

시설 형태	깔짚 방식	계류식	프리스틀 방식
마리당 면적	9.0	6.0	6.3

(3) 그 밖의 젓소 품종: (1)의 기준에 따른다.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송아지는 젓을 떼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구분	용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중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틀) 2.6[군사 (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용돈: 성숙한 수돼지(교배에 활용되는 수돼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젓을 먹이는 중인 암돼지
5. 중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돼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돼지
7. 새끼돼지: 초기(젓먹이 돼지), 후기(젓 떼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4)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경영 형태(유형)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
번식경영-1	번식 → 분만
번식경영-2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비육경영-1	새끼돼지 → 비육
비육경영-2	비육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종계·산란계	케이지 (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0.075m ² /마리	
	평사 또는 고상식 시설 (고상식 시설은 종계를 사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마리/m ²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m ² /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창문이 없는[무창(無窓)]계사 또는 고상식	39kg/m ²	

	시설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m ²	
	자연환기	33kg/m ²	
케이지		0.046m ² /마리	

비고

고상식 시설: 평상 형태로 바닥이 아닌 상층에서 사육하고 분(糞)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 (2) 시설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케이지 한 칸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 (3)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 (4) 사육시설 형태가 2단 이상의 고상식 시설인 경우에는 각 단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
- (5) 종계·산란계의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성장단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5) 오리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m ² /마리	
육용 오리	0.246m ² /마리	창문이 없는 시설[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m ² /마리 적용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 (2) 사육시설 형태가 2단 이상의 고상식 시설인 경우에는 각 단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
-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육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이상
		6주령 미만	

2. 축산업의 허가 요건

가.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의 설치·구비 기준

1) 종축업

가) 종돈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p>(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p> <p>(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p>
사육 시설	<p>(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추는 것</p> <p>(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p> <p>(나) 종돈 사육시설에는 사육단계별(분만·포유·육성)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p> <p>(다) 종돈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p> <p>(라) 종돈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2) 외부에서 들어온 종돈을 일정 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한 후 들어오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종돈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 사육시설을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된 별도의 건물에 설치할 것</p>
소독 및 방역 시설	<p>「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는 것</p>
악취저감 장비·시설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는 것</p> <p>(1)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된 액비(液肥: 액체 비료)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p> <p>(2) 음수(飲水)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p>

	<p>(3)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p> <p>(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p>
인력	<p>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3)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p>
기타	종돈의 관리(교배, 분만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나)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p>(1) 종계·종오리 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p> <p>(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p>
사육 시설	<p>(1)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p> <p>(가)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p> <p>(나)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계·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p> <p>(다)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부화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p> <p>(라)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종계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출 것</p> <p>i)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p>

	<p>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ii)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p> <p>iii)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p> <p>(마) 2단 이상의 고상식 시설을 이용하여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갖출 것</p> <p>i) 고상식 시설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사육시설에 설치할 것</p> <p>ii) 고상식 시설은 6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iii) 사육하는 종계·종오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설비 등을 갖출 것</p> <p>iv) 상층에서 사육하는 종계·종오리의 배설 분뇨로 인해 하층의 종계·종오리가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분뇨처리가 용이한 구조·설비 등을 갖출 것</p> <p>v) 통로 확보 등 입식 및 출하에 지장이 없는 구조·설비 등을 갖출 것</p> <p>(2) 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p> <p>(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화장 안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출 수 있다.</p> <p>(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p>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이동통로 등 장비·시설	<p>종오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p> <p>(1) 종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종오리가 사육시설 외부의 바닥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사육과정에서 종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하여 사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2)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시설(왕겨 등 깔짚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표에서 “깔짚 보관 시설”이라 한다). 다만, 사육시설 내부에 종오리 사육공간과 벽 등으로 구분된 깔짚 보관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깔짚 보관 시</p>

	<p>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가)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할 것</p> <p>(나) 쥐·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을 것</p>
인력	<p>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2)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3) 종계 또는 종오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p>
기타	<p>종계 또는 종오리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p>

2) 부화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란	<p>종계육종회사·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p>
부화 시설	<p>(1)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p> <p>(가)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p> <p>(나)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p> <p>(다)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p> <p>(2) 부화업을 하는 자가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사육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p> <p>(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p> <p>(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p>
소독 및 방역 시설	<p>「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p>
기타	<p>(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부화장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p> <p>(2)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한다) 대장을 갖출 것</p>

3) 정액등처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	---------

종축 및 정액 등

(1) 소

(가)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씨수소를 1마리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여야 한다)

i)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일 것

ii)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을 것

(나)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의 기준에 맞는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2) 돼지

(가) 정액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돼지(번식용 씨돼지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30마리 이상 보유할 것

(나) 정액 생산 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 성적이 다음 표의 105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을 것

품종	105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cm)	생존 새끼 수 (마리)
	105킬로그램 도달 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요크셔	157 이하	662 이상	2.2 이하	1.7 이하	13 이상
랜드레이스	155 이하	670 이상		1.6 이하	12 이상
두록	147 이하	707 이상		1.6 이하	1.5 이하
버크셔,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	173 이하	600 이상		1.5 이하	
번식용 씨돼지	145 이하	715 이상			
재래돼지	347 이하	300 이상		2.0 이하	

비고

1. 1일 체중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태어난 때부터 105킬로그램 이하까지)

2. 사료 요구율은 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을 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3. 생존새끼 수는 살아서 태어난 새끼의 수를 말하고,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분만 후 죽은 새끼 돼지를 말한다)과 미라(죽은 상태로 태어난 새끼돼지를 말한다)는 제외함
4.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 보정방법: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 1.08 = 8.6)		

(다)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돼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나)의 기준에 맞는 씨수돼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사육
시설

- (1) 종축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사육시설과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않는 종축의 사육시설은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
- (2) 제조실: 정액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
- (3) 사육시설과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 (4)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장비

- (1)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구 분	기 계 · 기 구 명	비 고

	채취용	인공 질 1대	소 정액 생산 시 해당
		모형암태지 1대	돼지 정액 생산 시 해당
		채란기 1대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검사용	현미경(가온판 부착), 항온수조, 전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소독용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인쇄용	스트로 인쇄기 1대	
	봉합용	스트로 봉합기 1대	
	동결용	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보관용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2)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인력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살아 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여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1)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 (2)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다.		

4)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젃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한우·육우: 500제곱미터 초과 젃소: 640제곱미터 초과	한우·육우: 500제곱미터 이하 젃소: 640제곱미터 이하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어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착유실 등 (착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취막기) 및 방충 시설을 설치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p>할 것</p> <p>(3)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p> <p>(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p> <p>(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p>	<p>(3)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p> <p>(4)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p>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 출 것	

나) 돼지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p>(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p> <p>(가) 가축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p> <p>(나) 가축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2) 외부에서 들어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p> <p>(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p> <p>(4)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을 확보할 것</p>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 출 것	
악취저감 장비·시설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 출 것</p> <p>(1) 부속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p> <p>(2)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p> <p>(3)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p>	

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다)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p>(1)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을 하거나 2단 이상의 고상식 시설을 이용하여 육계 사육업 또는 오리 사육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춰야 한다.</p> <p>(가)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케이지는 12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ii)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iii)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p>(나) 2단 이상의 고상식 시설을 이용하여 육계 사육업 또는 오리 사육업을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고상식 시설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사육시설에 설치할 것 ii) 고상식 시설은 6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iii) 사육하는 육계·오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설비 등을 갖추어 것 iv) 상층에서 사육하는 육계·오리의 배설 분뇨로 인해 하층의 육계·오리가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분뇨처리가 용이한 구조·설비 등을 갖추어 것 v) 통로 확보 등 입식 및 출하에 지장이 없는 구조·설비 등을 갖추어 것 <p>(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p>	
집란실 (산란계 사육업만)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해당한다)	(2)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 설치할 것	
이동통로 등 장비·시설	오리 사육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 설치할 것 (1)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사육시설 외부의 바닥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사육과정에서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하여 사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의 요건을 갖춘 깔짚 보관 시설. 다만, 사육시설 내부에 오리 사육공간과 벽 등으로 구분된 깔짚 보관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깔짚 보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할 것 (나) 쥐·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기준

- 1)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 방역관리지구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2)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 3)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비고

1. 2) 및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역 및 시설의 가축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축산 관련 시설"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돼지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소·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체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연구기관이며, 닭·오리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닭·오리 도축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계장, 종오리장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요건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악취저감 장비·시설	돼지 사육업의 경우에는 약품 등을 살포하여 악취물질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는 것